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. 6. 9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발 의 자: 안영란 의원 등 6명(원종진, 조복희, 배용식, 김기열, 박종길)

○ 발의일자: 2021. 5. 20.

○ 회부일자: 2021. 5. 28.

○ 상정 및 의결: 제280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. 6. 9.)

2. 제안이유

○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본 조례의 상위법의 제명 변경,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및 위원회 대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, 상호 협력 체계를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상위법의 제명 변경, 조문 변경 사항 반영(안 제2조, 안 제5조)

○ 위원회의 대행규정 명확화(안 제7조)

○ 협력체계 구축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통하여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: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, 제46조

○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비용추계서: 비대상

○ 입법예고(2021. 5. 20. ~ 2021. 5. 31.)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사항("국가정보화 기본법" 에서 "지능정보화 기본법" 으로 제명 및 조문 변경 - 2020. 12. 10)을 반영하고, 구 정보화위원회의 대행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.

○ 또한, 웹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·단체 등을 통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의무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○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 등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

○ '정보취약계층'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, "지능정보화 기본법"제명 변경과 관련된 "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" 또한 점검할 필요가 있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